

[저작권분쟁] 폰트 저작권 쟁점: 폰트 파일이 아닌 폰트 그 자체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폰트파일을 라이선스 없이 무단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소지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작권자측이 합의금조로 해당 폰트가 포함된 고액의 패키지를 강매하거나, 또는 글자체 외관의 일부 유사성만에 근거하여 실제로 해당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도 않은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폰트 관련 분쟁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 폰트의 법적 보호에 관한 기본 법리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폰트와 폰트 파일의 구별

폰트(서체 또는 typeface)의 역사는 2000 년 이상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로마시대 건축물이나 고대 중국의 서책, 비석 등에서 볼 수 있는 글자들은 이미 일관성 있는 특정 모양으로 반복하여 표현되어 있어, 인쇄물은 아니지만 폰트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후 목판인쇄 및 주조활자 시대를 거쳐 1900 년대에 들어서면서 폰트의 종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사진 식자 시대를 지나 컴퓨터를 통해 편집과 인쇄를 하고 있는 요즘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폰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폰트를 제작, 공급하던 foundry 들은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불러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폰트, 즉 폰트 파일을 만들어 배포합니다.

폰트 파일은 해당 폰트에 속하는 각 글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90 년대까지는 이른바 비트맵(bitmap) 또는 그레이스케일(grayscale) 폰트 파일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각 글자의 모양을 폰트 파일에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 형태의 폰트 파일은 글자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면 글자를 구성하는 선이 깨져버린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고, 이에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이른바 윤곽선 폰트 파일이 사용됩니다. 윤곽선 폰트 파일에는 각 글자의 테두리 모양을 형성하는 직선 및 곡선을

수학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공식이 저장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글자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더라도 깨짐 없이 글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폰트는 매우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것인 반면, 이를 컴퓨터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폰트 파일은 최근에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래 전에 만들어진 폰트의 경우에는 여러 foundry 들이 거의 동일한 모양의 폰트를 제공하는 폰트 파일을 각기 만들어 배포하기도 합니다.

2. 폰트와 폰트 파일의 법적 보호

이렇게 폰트와 폰트 파일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그에 대한 법적 보호도 달리 이루어집니다.

폰트의 경우 극소수의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특별법 또는 저작권법의 신설 규정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폰트 자체에 대한 저작권법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 누 5632 판결은,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윤체 B', '공한체 및 한체모음' 등 이 사건 서체도안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이 사건 서체도안은 ...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라고 하여 폰트 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4 년 이후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폰트에 대한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고, 이에 폰트 자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폰트 파일의 경우에는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보아 보호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대법원도 2001. 6. 29. 선고 99 다 23246 판결에서, "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되는바, 서체파일의 소스코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윤곽선 폰트가 아닌 비트맵 또는 그레이스케일 폰트 파일의 경우, 실질적으로 이미지 파일과 동일하므로 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3. 법적 보호의 범위 및 한계

결국 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폰트 파일과 달리, 폰트 그 자체는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할 뿐, 현재로서는 저작권법적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디자인보호법은 제 94 조 제 2 항에서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및 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 대해서는 폰트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디자인 등록된 폰트를 사용하여 인쇄한 책 등에는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폰트 파일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폰트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받거나 또는 무단 개작하여 변형된 폰트 파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가 분명하지만, 불법 폰트 파일을 워드나 일러스트레이터 등 프로그램에서 불러 사용한 뒤 만든 인쇄물에는 폰트 파일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아쉽게도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받은 MS 워드로 제작한 책에 MS 사의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폰트에 대한 디자인권 및 폰트 파일에 대한 프로그램저작권만으로는 폰트라는 지적 창작의 결과물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쇄물 등 결과물에게까지 디자인권이나 저작권이 미치는 것으로 보면, 결국 폰트 그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폰트는 글자 그 자체와 결합되어 있어, 폰트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할 경우 "종래의 문화유산으로서 만인 공유의 대상이 되고 의사, 사상, 감정 등의 전달, 표현 등의 기본적 수단인 글자 내지 문자의 사용에 관하여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 명백하고 결과적으로는 서체도안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문자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이는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에 오히려 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 구 25075 판결).

같은 취지에서 폰트 그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영국의 경우에도, 불법복제물인가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사용과정에서의 폰트 사용과 인쇄물 등 그 결과물에는 폰트에 대한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4. 실무적 유의사항 - 폰트 판매자의 라이선스

폰트 파일 사용자는 폰트 foundry, vendor 내지 판매자로부터 폰트 파일 사용권을 라이선스받는 것이므로, 라이선스의 내용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폰트 **파일**을 회사 내 컴퓨터, 프린터 또는 서버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거나, 또는 웹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식의 제한이 삽입됩니다. 폰트 파일을 설치할 수 있는 컴퓨터의 수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폰트 파일이라는 프로그램저작물을 사용하여 인쇄한 결과물의

사용처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는 일부 국내 foundry 의 경우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해외 foundry 들은 위와 같은 폰트 그 자체에 대한 법적 보호의 범위 및 한계를 고려하여 라이선스 문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일부 국내 업체의 경우 결과물 사용처에 대한 제한을 라이선스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라이선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폰트 파일 하나를 불법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는데 저작권자측이 고액의 패키지 구매를 합의금 대신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폰트 파일이 10 만원 미만의 날개 라이선스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데도 수백 내지 기천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패키지 라이선스를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저작권자로부터 내용증명 등을 받은 경우에도,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관련 법리에 기초한 적절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실을 보다 면밀하게 입증해야만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재권분쟁, 침해대응/감정,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One-Stop 대응, A~Z 수행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